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1호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3 2 4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
- 공 고 제 1 3 2 5 호 수용재결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선)] 4
- 의 회 사 무 국 제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보 건 소 공 고 제 8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3

고 시

- 고 시 제 8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32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7-140호(2017. 12. 11.)로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된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8월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1. 사업개요**

- 사업지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 일원
-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정길

2. 보상대상

- 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42-3외 45필지 및 구월동 69-4외 87필지
- 지장물 등: 위 토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영업손실보상: 사업시행구역 내의 영업손실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함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목록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 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열람

- 열람기간: 2018. 8. 10. ~ 2018. 8. 24.(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469-4693)

5. 이의신청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469-469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문의사항은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469-4693)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3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선)] 수용재결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8월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중로 1-10호선 사업
3. 사업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0번지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2018. 08. 09. ~ 2018. 08. 24.(15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
6. 송달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1	이*중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길 **-**(천호동)	폐문부재	1899687623506

7.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8-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8월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2018.8.8.)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소통협력담당관,감사실,홍보미디어실 및 자치행정국,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 제6조 2항)
- 위원회 변경 부서
 - 총무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신설), 안전총괄과(명칭변경), 문화관광체육과(명칭변경), 토지정보과(위원회변경, 사도 ⇒ 총무)
 - 사회도시위원회: 공영개발과(위원회변경, 총무 ⇒ 사도), 공동주택과(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61
----------	------

발의년월일 : 2018년 8 월 8 일

발 의 자 : 김윤숙 의원

찬 성 자 : 이정순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2018.8.8.)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및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 제6조 2항)
- 위원회 변경 부서
 - 총무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신설), 안전총괄과(명칭변경), 문화관광체육과(명칭변경), 토지정보과(위원회변경, 사도 ⇒ 총무)
 - 사회도시위원회: 공영개발과(위원회변경, 총무 ⇒ 사도), 공동주택과(신설)

☐ 본 문

☐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62조

남동구 조례 2018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가목 중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을 “소통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u>공영개발사업단</u> , <u>안전총괄실</u> ,감사실,홍보미디어실,자치행정국,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총무위원회 가. <u>소통협력담당관</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김윤숙 의원 (인)

[참고자료1]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①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8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2018. 8. 27.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8. 8. 10. ~ 2018. 8. 2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15- 0199848	날마다좋은날	정**	소래역남로16번길 8-31, 103호(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8-09	2018-08-27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8. 08 2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될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 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8월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0번길 35-1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0번길 35-1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0 번길	35-1	2009. 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8.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90번길 35-1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1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번길	15-6	2012. 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8.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10번길 15-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15-6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4-1,2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 길	62	2009. 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8.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644번길 62 기초구간에위치하여62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4-3	2009. 11.16	논현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8. 08.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로 14-3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3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62번길	26-11	2012. 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8.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62번길 26-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26-11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0번길	35-1	2018.08.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62	2018.08.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